

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8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8월 8일

3. 제안이유

-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문개정('95. 1. 5)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의 폐지('95. 7.13)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함과 아울러 도 및 도교육청의 직제변경 등에 의거 동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동조례 제1조 인용조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,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 제12조를 삭제함.
- 도 교육청 직제변경에 따라 조례 제2조 중 학무국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함.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이는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면개정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례조문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서

주요 내용으로는

- 현행조례 제1조 목적의 법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과 아울러
- 위원의 구성에 있어 도교육청학무국장을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으로 하고
-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분기별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해 년1회로 하는등과
- 동위원회 간사의 당연직선임의 조문에 있어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에 의해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상위법의 존폐 및 개정과 관련하여 현실불부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칙 부

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